

보 상 계 획 공 고

2023년 5월 18일

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



포항국토관리사무소 시행 「국도7호선 울진 기성 척산교차로 개선공사」에 편입될 토지의 보상계획을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공사에 편입될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공사명 : 국도7호선 울진 기성 척산교차로 개선공사
2. 사업시행자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3.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: 붙임 참조
4. 사업개요 : 교차로 개선 1식
5. 사업기간 : 2022.10.17.~2025.9.30.
6. 사업구간 :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산25-8번지 일원 및 정명리 산179-2번지 일원
7. 열람방법 : 대상 토지 및 지장물조서는 포항국토관리사무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, 울진군(건설과),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.
- 홈페이지 주소 : <http://pcmo.molit.go.kr>
8. 보상시기 : 2023년 8월 감정평가 후 2023년 9월 중 보상 예정
9. 보상방법 및 절차(감정평가업체 추천 및 보상금 산정)
 -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8조(사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) 규정에 의거 사·도지사 및 토지소유자는 각각 감정평가업자 1인을 별도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.
 - 토지소유자는 동법 제15조(보상계획의 열람 등) 제1항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지행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(단,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할 수 없음)
- 보상금은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지급합니다.

「감정평가업자 추천서」

토지소재지	편입지번	편입면적	소유자		인감날인	전화번호	비고
			성명	주소			

※ 제출양식상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하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, 대리인 서명은 불가함.(단, 소유자 사망이거나 거소 불명에 따른 상속인은 제적등본 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.)

10. 열람기간 : 2023.5.18.~2023.6.2.(16일간)

11. 의견제출장소 : 포항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(☎054.260.2572, 2592)
(주소: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전길141)

붙임 토지 및 지장물 조서 1부. 끝.

포항국토관리사무소장

